

인도-영국, 자본시장 연계를 통한 양국 성장 촉진

(4.14, 금융중심지육성2팀)

□ 인도와 영국은 자본시장(Equity Capital Markets)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핵심과제로 양국 증권거래소 간 주식 교차상장(cross-listing) 추진 고려

- 인도-영국 금융 파트너십(IUKFP)*이 작성한 보고서(Catalysing bilateral growth: Connecting India and the UK's equity capital markets)에서 자본조달 및 투자 활성화를 권고

* 2014년 설립된 인도-영국 정부 간 정책 협의체로, 양국 간 상호 투자·무역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과 이행을 지원 중(TheCityUK와 Kotak Mahindra Bank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)

- 특히 △인도의 뭄바이증권거래소(NSE) 및 봄베이증권거래소(BSE) 상장 기업의 런던 증권거래소(LSE) 상장 허용 △영국 상장 기업의 인도 거래소 상장 등 교차상장 허용

□ 인도 기업이 해외 자본조달 수단으로 이용 중인 예탁증서(DR)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감소

- 주식 교차상장 체계 구축을 위한 법·제도 정비를 논의 중

□ 성공적인 교차상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제·회계기준·세제·투자설명서 요건·실소유자 공개 기준·거래 및 결제 체계 등의 차이를 지적

□ IUKFP는 양국 규제당국과 정책입안자에게 핵심 권고사항 제시

〈권고사항별 주요 내용〉

| 구 분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|---|
| 규제 허용 확대 | 런던증권거래소에 인도 주식의 교차상장 허용 |
| 교차상장 허용 | 영국 상장기업의 주식, 인도 내 NSE/BSE 상장 허용 |
| 투자설명서 승인권 부여 | 영국금융감독청(FCA)과 인도증권거래위원회(SEBI)가 교차상장 투자설명서를 상호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|

| | |
|---------------|--|
| IFRS 회계 기준 수용 | 영국 상장 기업이 인도 상장 시 IFRS 회계 및 국제 감사 기준 사용 허용 |
| 세제 정비 | 양도소득세 등에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세제 정비 필요 |
| 실소유자 기준 통일 | 인도 기업의 런던 상장 시 실소유자 공개 기준 통일 |
| 옴니버스 계좌 허용 |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옴니버스 계좌 구조 허용 |
| 결제 인프라 구축 | 양국 간 직접 결제 시스템 개발 추진 |

※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권고안은 IUKF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

□ IUKFP 공동 의장 및 관련 인사 발언 요약

○ Bill Winters (영국 측 의장 / 스탠다드차타드그룹 CEO)

“영국과 인도는 금융 협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으며, 이번 보고서는 교차상장을 통한 실질적인 시장 연계 방안을 제시. 자본조달과 투자를 지원하고, 영-인 금융허브를 글로벌 협력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”

○ Uday Kotak (인도 측 의장 / Kotak Mahindra Bank 창립자)

“인도와 영국은 오랜 무역 파트너로, 금융 부문에서도 혁신과 협력을 통해 성장을 도모해야 함. 이번 보고서의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·업계·규제기관 간 협력이 핵심”